

선 거 관 리 규 정

1991. 08. 30. 제 4회 이사회 제정
1992. 10. 08. 제 7회 이사회 개정
1993. 11. 08. 제10회 이사회 개정
1995. 11. 06. 제10회 이사회 개정
1997. 09. 08. 제 5회 이사회 개정
1999. 05. 22. 제 3회 이사회 개정
2001. 01. 15. 제 1회 이사회 개정
2001. 09. 10. 제 5회 이사회 개정
2002. 11. 11. 제 6회 이사회 개정
2003. 09. 22. 제 5회 이사회 개정
2004. 07. 09. 제 4회 이사회 개정
2005. 09. 09. 제 5회 이사회 개정
2007. 09. 10. 제 5회 이사회 개정
2009. 09. 14. 제 5회 이사회 개정
2011. 09. 19. 제 5회 이사회 개정
2011. 11. 14. 제 6회 이사회 개정
2021. 09. 10. 제 4회 이사회 개정
[2023. 07. 10. 제 4회 이사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29조 및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대의원 및 임원(이사 및 감사)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협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임기개시) ① 대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개시하며 기타 임원은 임기만료일에서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선에 의한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선거권) ① 본회의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외국인 회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기업회원의 대표자가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1인 1표 원칙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4.>

③ 기업회원의 대표자가 개인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가 권한을 위임한 임직원 1인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4.>

제4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정권 또는 제명된 자
2. 2년 이상의 회비를 체납한 자

3. 해외 거주 또는 장기 체류자
4. 회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5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 및 감사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정권 또는 제명된 자
2.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3. 해외 거주 또는 장기 체류자
4. 회원 가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경력이 대졸 후 5년, 고졸 후 9년 미만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9. 10.>

제6조 (당선무효)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2에 해당하는 자가 당선되었을 때에는 미납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그리고 제1항의 3에 해당하는 자는 귀국함으로써 복권된다.

제2장 선거관리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에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대의원 선거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투표에 관한 서식, 절차, 규정, 유권해석,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등을 결정한다. 다만, 본회 및 지회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되 반드시 감사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거일로부터 당선인의 첫 집회까지로 한다.

제8조 (명부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있는 해의 9월 1일 현재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대의원 정수를 결정 받아야 한다.

② 회원명부는 가나다순으로 작성한다.

③ 회원명부에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직장을 기록한다.

제9조 (입후보의 기회균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삭제 <2009. 9. 14.>

③ 후보자 등록서에는 주소,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공적사항, 기타 인적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④ 후보자 등록서에는 [별표 1] 양식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 2인 이상이 추천인으로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대의원 입후보자를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단, 직선 대의원 역임자는 회원 기명날인 없이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개정 2011. 9. 19., 2023. 7. 10.>

⑤ 후보자의 등록서는 선거일 15일 전 하오 6시까지 언제든지 접수하며 하오 6시 이후에 도착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후보자 등록 후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추천장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⑦ 소속기관이 동일한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는 3명 이내로 제한한다.

- ⑧ 입후보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
- ⑨ 주소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후보 안내서, 입후보 등록서 등 선거와 관련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14.>

제10조 (후보자 명부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마감과 동시에 후보자 등록서에 기록된 내용을 간기하여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대의원 정수의 1.5배에 미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후보자의 수를 결정하고 후보를 추천하여 명단을 작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 등록을 마친 자가 선거관리 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는 별도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명단작성은 가나다순으로 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협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기술향상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3. 대졸 후 5년, 고졸 후 9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1. 9. 10.>

제11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후보자의 정수에 따라 성명 좌란의 기표난에 ○표로 표시하며 1인 1표로 한다.

② 대의원 정수를 초과하여 기표하여서는 안된다.

③ 투표는 전자 투표로 시행한다. <개정 2023. 7. 10.>

④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3. 7. 10.>

⑤ 삭제 <2023. 7. 10.>

제12조 (선거일)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 (투표용지) 삭제 <2023. 7. 10.>

제14조 (전자투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 선거일 10일 전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전자투표 공지 시 반드시 선거일과 대의원 정수가 명시된 투표요령서, 기타 선거용 보조자료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23. 7. 10.>

③ 전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개정 2023. 7. 10.>

④ 삭제 <2023. 7. 10.>

제15조 (투표용지의 무효) 삭제 <2023. 7. 10.>

제3장 개 표

제16조 (개표관리) 삭제 <2023. 7. 10.>

제17조 (개표결과) ① 전자투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하에 확인한다. <개정 2023. 7. 10.>

② 개표 결과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의 등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전자투표 결과의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 순위별로 전자투표 결과를 정리하고, 투표인 명부와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전자투표 결과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③ 전자투표 결과, 투표인 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그 당선인의 임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4장 당 선 인

제19조 (당선인 결정 및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대의원 정수의 80%에 이르는 자까지를 대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 순위로서 득표수가 같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에 당선된 자는 당선통지를 받은 후 취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간접선거 대의원의 당선인 결정) ① 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 정수의 20%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 선출 대의원 정수의 1.5배 이내의 대의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후보 추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 선출 대의원이 선출되면 본 규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선인을 확정한다.

제21조 (당선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당선인이 대의원의 임기 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당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자

제22조 (당선인의 재결정) 규정 제20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선 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차득표자 중에서 득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대의원 또는 감사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2. 선거무효의 이사회 결정이 있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궐선거) 대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다만, 대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도 그 수가 재적 대의원수의 5분의 1 이내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임 원 선 출

제25조 (임원선출) ① 대의원에 당선된 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한다.

② 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회의 임시의장은 최연장자가 되어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다른 이사의 선출은 새 회장의 주최하에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행한다.

제26조 (회장 입후보 등록 및 선출방법) ① 회장에 입후보할 자는 회장 선거일 3일 전까지 직선 대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표 2] 양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 협회 운영방침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의결권이 부여된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11. 9. 19., 2021. 9. 20.>

④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⑤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27조 (임원의 보궐선거) 임원(이사 및 감사) 중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 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궐원된 임원의 수가 재적 임원의 5분의 1 이내로서 이사회 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선거일) 본 규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의원 및 감사의 선거일은 1991년 11월 29일로 한다. 다만, 회원명부는 1991년 10월 30일 현재로 작성한다.
3. (임기) 본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1993년 11월 25일까지로 하며 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5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 .		
	(한자)			
현직장 및 직책	(☎) (HP)			
자택주소	(☎)			
주요경력				
수상경력				
추천인	회원번호	성명	근무처	날인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제 기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회장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 .	
	(한자)		
현직장 및 직책	(☎) (HP)		
자택주소	(☎)		
학 력			
주요경력			
수상경력			
추천인	대의원 성명	근무처	날 인
선거관리 규정 제26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회 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20 . . . 입후보자 (인)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위 임 장

피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번호 :

본인은 귀회 선거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20 년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20

위 임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사 단 법 인 한국설비기술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 중